

의안번호	제 123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26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6월 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3
----------	-----

제출연월일 : 2007년 6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정원의 연장과 중앙정부 권고 및 신규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조정과 부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649명 ⇒ 2,654명 (증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77명 ⇒ 1,482명 (+5명)
 -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증원내역 : 일반직 증4명, 연구직 증1명
 - 일반직(6급+2, 7급+2), 연구직(연구사+1)
- 직급 조정 : 일반직 5명, 기능직 2명
 - 일반직 : 7급(△5명) ⇒ 6급(+5명), 기능직 : 8급(△2명) ⇒ 6급(+2명)
- 한시 기구 및 정원 존속기한 연장
 - 혁신담당관실(4급) : 2007. 6. 30. ⇒ 2008. 6. 30.
 -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4급) : 2007. 6. 30. ⇒ 2009. 12. 31.
 - 한시정원(5급2, 6급1, 7급1) : 2007. 6. 30. ⇒ 2008. 6. 30.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참고자료 :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2,649명”을 “2,654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77명”을 “1,482명”으로 한다.

별표 1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중 정원의 총수 2,649명을 2,654명(증원 5명)으로 하고, 본청의 정원 985명을 990명(증원 5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직급정원)본청의 정원 4급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4급 1명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소의 정원 2명(3급1, 4급1)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및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부칙(제2965호, 2006. 12. 22.)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한시기구)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종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정원	2,654	990	70	1,307	287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직	소계	1,089	823	44	67	155
	2-3급	1		1		
	3급	9	7		1	1
	3-4급	1	1			
	4급	60	40	7	5	8
	5급	217	172	10	14	21
	6급	367	284	14	19	50
	7급	376	278	12	24	62
	8급	57	40		4	13
	9급	1	1			
일반 별정	소계	4	3	1		
	5급	2	1	1		
	6급	1	1			
	7급	1	1			
별정직	소계	18	10	2	5	1
	1급	1	1			
	5급	2	2			
	6급	10	3	1	5	1
	7급	2	2			
	8급	2	1	1		
연구직	소계	141	2		110	29
	연구관	21			18	3
	연구사	120	2		92	26
지도직	소계	25			25	
	지도관	6			6	
	지도사	19			19	
소방직	소계	1,058	59		999	
	소방정	10	2		8	
	소방령	29	10		19	
	소방경	58	4		54	
	소방위	68	6		62	
	소방장	145	11		134	
	소방교	327	24		303	
	소방사	421	2		419	
교원	소계	44			44	
	학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2			32	
	조교	11			11	
기능직	소계	274	92	23	57	102
	6급	11	8	1	1	1
	7급	30	10	4	4	12
	8급	52	15	1	4	32
	9급	87	23	7	30	27
	10급	94	36	10	18	30

[별표2]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30	일반직 : 4급1, 5급6, 6급9, 7급7, 8급6 기능직 : 10급1		
본 청	4	일반직 : 5급2, 6급1, 7급1	2008. 6. 30.	혁신지원 및 고객만족업무
	2	일반직 : 6급1, 7급1	2007. 12. 31.	사업별예산업무
	4	일반직 : 5급1, 6급2, 7급1	2008. 12. 31	역사규명업무
	1	일반직 : 6급1	2008. 12. 31.	과거사 업무
	3	일반직 : 7급1, 8급1 기능직 : 10급1	2008. 12. 31.	복식부기업무
	1	일반직 : 7급1	2008. 12. 31.	동학관련업무
	15	일반직 : 4급1, 5급3, 6급4, 7급2, 8급5	2008. 10. 30.	혁신·기업도시 관련업무

신·구조문대비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649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원의 총수) 2,654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77명	1. : 1,482명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35조(소관사무)생명산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소관사무).....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4.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및 연구시설 대학등 유치에 관한사항	5.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및 대학 등 유치에 관한사항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부칙(제2965호, 2006. 12. 22)	부칙(제2965호, 2006. 12. 22)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한시기구)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 제5조(생략)	제3조 ~ 제5조(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6조(한시정원)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④<삭제>

- ⑤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
- ⑥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1조 (정원의 규정)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⑤ (생략)

비 용 소 요 추 계 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의 총수 : 2,649명 ⇒ 2,654(증5명)
 - 일반직(+4) : 6급 +2, 7급 +2
 - 연구직(+1) : 연구사 +1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53,755	
○ 인건비	213,036	
- 기본급	120,004	※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6급(2명) : 18호봉 기준 - 7급(2명) : 15호봉 기준 - 연구사(1명) : 16호봉 기준
- 수 당	38,729	
- 정액급식비	7,800	
- 교통보조비	7,800	
- 명절휴가비	11,999	
- 가계지원비	20,039	
- 연가보상비	6,665	
- 기타직보수		
- 일용인부임		
○ 물건비	11,34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8,94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0	
○ 이전경비	29,379	
- 성과상여금	3,998	
- 연금부담금	21,100	
- 국민건강보험금	4,281	
- 연금지급금	-	